광명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

제정 2025. 3. 7 조례 제322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건·복지,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국민영양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
2.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
3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
2. 시민의 영양·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
3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영양·식생활 교육)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.

제6조(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)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

하여 보건·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